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00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 : 윤준병 · 강민정 · 김경협

김정호 · 김주영 · 김철민

민형배 • 민홍철 • 박재호

송재호 · 신영대 · 오영환

윤영덕 • 윤재갑 • 이용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의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징계사유)	1.2	(생	제69조(징계사유)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삭 제			
④ 삭 제			
<u><신 설></u>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
			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의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
			<u>하여야 한다.</u>